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번	안 호	2215
--------	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15.

발 의 의 원 : 김보경 의원,  
신동윤 의원, 김은영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“주민”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(정의) 제1호라목에서 당초 군 소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 등 임직원에서 군 소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수정

붙임 수정안 1부.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군 소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조례(안)과 수정(안)의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주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군에 사무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·직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군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임·직원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군 소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 등 임직원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조례안과 동일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~ 다. (조례안과 동일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군 소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</p>

## □ 지방재정법 제39조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

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청회 또는 간담회

2. 설문조사

3. 사업공모

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
1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

2.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

3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

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